

<p>② 우대서비스</p> <p>1. 전자금융(주3) 당,타행이체수수료 면제 (주3) 인터넷뱅킹,스마트폰뱅킹,텔레뱅킹, 모바일뱅킹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3. 타행 CD/ATM 출금수수료 면제</u> <u>(단, 은행 점포내 자동화기기에 한 함)</u>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9조 (생략)</p>	<p>② 우대서비스</p> <p>1. 전자금융(주2) 당,타행이체수수료 면제 (주2) 인터넷뱅킹,스마트폰뱅킹,텔레뱅킹, 모바일뱅킹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3. 타행 CD/ATM 출금수수료 면제</u> <u>(월10회, 단, 은행 점포내 자동화기기에</u> <u>한 함)</u>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9조 (좌동)</p>	<p>타행 CD/ATM 출금수수료 면제횟수제한</p>
---	---	--

「에듀큐(eduQ) 통장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에듀큐(eduQ) 통장(이하 '이 통장'이라 합니다)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명의 여성 개인으로 합니다. (개인사업자 불가)

제4조 가입제한

이 통장의 가입은 1인당 1계좌에 한합니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통장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
제6조 가입기간

이 통장의 가입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

제7조 이자

- ① 이 통장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 기준일에 셈하여 해당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.
 1. 이자계산기준일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 2. 원가일 :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
- ② 이 통장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.
 1. 해당 이자계산기간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미만
 2. 해당 이자계산기간 매일의 최종잔액 5천만원 이상

제8조 우대서비스의 제공

- ① 제공조건(1 ~ 3 中 1개이상 충족)
 1. 이 통장으로 공과금 2건이상 자동이체(주1)를 하는 고객
 2.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'에듀큐 신용카드' 또는 '2X카드' 결제실적이 있는 고객
 3.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'에듀큐 체크카드' 20만원이상 결제실적이 있는 고객

(주1) 공과금 자동이체로 인정되는 경우

- 공과금은 C/C방식에 의한 지로이체, CMS이체에 의한 자동이체만 해당하며

APT관리비자동이체와 고객이 임의로 자금을 이체하는 실시간 이체는 제외

② 우대서비스(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)

1. 전자금융 (주2) 당·타행 이체수수료 면제

(주2)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텔레뱅킹, 모바일뱅킹

2. 당행 CD/ATM 이용수수료 면제

- 당행 CD/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의 마감후 당행이체 및 마감후 인출 시 수수료 면제.

타행이체는 면제 불가

3. 타행 CD/ATM 출금수수료 면제 (월 10회, 단, 은행 점포내 자동화기기에 한함)

③ 제공방법 : 전월에 '제공조건'을 충족하는 경우 당월에 '우대서비스' 제공

④ 우대서비스 특례: 최초가입 후 익월말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제9조 사정변경

① 본 특약의 내용은 은행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은행이 본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은행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·안내합니다.

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1개월 전에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1조 (약관 변경)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게시·안내합니다.

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④ 거래처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부칙 (제정)

이 규정은 2011. 8. 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1)

이 규정은 2012. 6.27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)

이 규정은 2012. 8.24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3)

이 규정은 2013. 11. 7.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4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